

9. 海外建設促進法施行規則 改正令

建設部令 第543號, 1993. 12. 31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서등)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용자산액명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능력보유조서
3. 법 제6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외국인등록표등본(수출입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신청인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기업진단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의 등록신청이나 갱신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해외건설업등록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해외건설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는 별표 1에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갱신신청서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등록갱신신청서에는 제2조 제2항제2호나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해외공사수행계획신고서 서식등)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수행계획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해외공사수행계획신고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입찰예정일에 임박하여 발주자로부터 입찰에 초청된 경우나, 당해지역 또는 당해 국가의 현지사정등으로 수행계획신고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해외공사수행계획신고필증)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

수행계획신고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1조(수주활동상황보고) ①영 제17조 제1항제1호가목의 수주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12조(입찰결과보고) 영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입찰결과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계약체결결과보고) ①영 제17조 제1항제1호다목의 계약체결결과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공사계약체결결과보고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 계약공사개요서
3. 계약서사본(현지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제14조(해외공사실적보고등) 영 제17조 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보고는 별지 제16서식, 다음 연

도 해외공사수주계획보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시공상황보고) 영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의 시공상황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국산기자재사용실적보고) 영 제17조제1항제2호나목의 국산기자재사용실적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준공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다목의 준공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호의 준공보고서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외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내용변경 및 사고보고의 내용) ①영제17조제1항제2호라목의 공사내용변경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마목의 사고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제19조(수주경합조정외의 심사기준) 영 제18조제7호에서 “기타 원활한 수주경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산기자재의 사용실적
2. 외화가득실적
3. 임금지급 및 노사관계
4. 공사자금의 조달능력(지급보증관계를 포함한다)
5. 일괄발주방식의 공사 또는 기술집약형공사의 도급실적
6. 현재 시공중인 해외공사의 시공상황
7. 해외건설협회의 자율적조정의 결과
8.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건설부장관이 해외공사의 수주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영업정지처분된 자의 해외공사) 법 제31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로부터의 낙찰통보를 받은 경우
2. 최저가로 입찰한 경우

제21조(기업진단)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의 기업진단에 관하여는 건설업체진단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의견진술절차)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등의 수수료)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 등록 및 갱신등록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외건설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제6조제2항관련)

| 변 경 구 분 | 첨 부 서 류 |
|---------------|---|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2. 해외건설업등록증 |
|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2.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 등본) 3. 해외건설업등록증 |
| 영업소재지 변경 |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해외건설업등록증 |
| 임원의 변경 |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2. 신원증명서 |

[별표 2]

해외건설업등록 및 등록갱신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 신 청 내 용 | 수 수 료 |
|---|-------|
| 1. 해외건설업등록 | |
| 가. 종합건설업 | 6만원 |
| 나.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 특수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 4만원 |
| 다.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 3만원 |
| 라.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 1만원 |
| 2. 해외건설업 등록갱신 | |
| 가. 종합건설업 | 3만원 |
| 나.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 특수공사업, 조경공사업,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 2만원 |
| 다.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 | 1만5천원 |
| 라.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 5천원 |

□ 개정이유 □

해외건설촉진법의 개정(1993. 8. 5. 법률 제4,57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6호)에 따라 각종서식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해외건설업등록의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와 등록대장, 등록갱신신청서, 수행계획신고서등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제2조 내지 제9조).
- 나. 해외건설업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시 청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청문절차를 정함(제22조).
- 다. 업종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3만원이었던 면허수수료를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및 국내건설업 면허수수료 수준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함(제23조).

〈건설부 제공〉

몰래버린 쓰레기가 공해되어 내게온다